

##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2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11.

제출자 : 이호영 의원, 김기자의원,  
이재문 의원, 이종구의원

### 1. 제정취지

- 현충일 추념식 참석보상금을 추념수당으로 확대 지급하여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현충일 추념 수당 지급대상자 규정.(안 제2조 제5호)
- 현충일 추념 수당을 신설함.(안 제6조)
  - 현충일 추념수당으로 3만원을 지급함.
  - 현충일 행사 전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
  -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
  -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등에 대해 추념수당 환수

#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
  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5조
  -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### 4. 입법예고결과

붙임 :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## 충주시 조례 제 호

###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현충일 추념수당 지급 대상자”란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4조와 제5조, 『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』 제4조와 제5조, 『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3조와 제4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·격려 및 모범자의 포상과 현충일 추념수당 지급

제6조를 제7조로, 제7조를 제8조로, 제8조를 제9조로,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현충일 추념수당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충일 추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1 수당금액은 3만원으로 한다.

2. 현충일 행사 전에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.

3. 대상자의 적격여부는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한다.
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추념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.

가.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때

나.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될 때

다. 지급대상자 사망 후 현충일 행사 추념수당이 지급되었을 때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-----
1. ~ 4.(생략)	1. ~ 4.(현행과 같음)
<b>&lt;신설&gt;</b>	5. <u>“현충일 추념수당 지급 대상자”란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4조와 제5조, 『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』 제4조와 제5조, 『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3조와 제4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u>
제5조(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)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한다.	제5조(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)-----
1. ~ 2.(생략)	1. ~ 2.(현행과 같음)
3.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·격려 및 모범자의 포상	3.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·격려 및 모범자의 포상과 현충일 추념수당 지급.
4. ~ 6.(생략)	4. ~ 6.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제6조(보훈단체 지원)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(생략)</p>	<p>제6조(현충일 추념수당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충일 추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1. 수당금액은 3만원으로 한다.</p> <p>2. 현충일 행사 전에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.</p> <p>3. 대상자의 적격여부는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한다.</p> <p>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추념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.</p> <p>가.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때</p> <p>나.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될 때</p> <p>다. 지급대상자 사망 후 현충일 행사 추념수당이 지급되었을 때</p>
<p>제7조(복지지원 등)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법령이나 각각의 해당조례가 저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(생략)</p>	<p>제7조(보훈단체 지원) 현행 제6조와 같음.</p>
	<p>제8조(복지지원 등) 현행 제7조와 같음.</p>

AS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민간의 참여조성) 시장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한다.</p>	<p>제9조(민간의 참여조성) 현행 제8조와 같음.</p>
<p>제9조(시행규칙)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0조(시행규칙) 현행 제9조와 같음.</p>